

의안 번호	1930	<b>울산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25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3. 25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4. 5.(화)

## 2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물품 관리법」 개정(2021. 4. 20.)에 따라 상위법령의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함.

## 3. 주요내용

-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 하도록 하는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용어삭제 (안 제35조)
  - 현 행 :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중구 누리집에 공개
  - 개 정 :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중구 누리집에 공개

## 4. 근거법규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92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(2021. 4. 20.)에 따라 상위법령의 필수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## 근 거 법 규

###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1. 4. 20.> [시행일: 2022. 4. 21.]